2022년 보육교사 자격기준 설명회 질의응답

2022. 12. 9.

한국보육진흥원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1. 보육실습

Q1	코로나로 인해 3번 분할 실습을 했습니다. 각각 보육실습확인서가 필요할까요? 코로나 증빙 자료도 같이 첨부하면 인정될까요?
A1	코로나로 인해 3회 이상 분할실습시 증빙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본인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경우, 코로나19 격리통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코로나 인해 3회 이상 분할실습이 이뤄진 경우, 3회 이상 실습이 진행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학과공문 또는 시군구청 발행 관련 공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코로나19(실습기관 내 확진자, 밀접접촉자 등)로 인해 휴원, 실습중단 등의 사유인 경우 가정통신문(원본대조필), 보육실습확인서 내 사유기재와 원장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Q2	개인적인 사유로도 2회 분할실습이 인정 되나요?
A2	보육실습은 2회로 나누어 실습이 가능합니다. ※ (예시) 양성교육기관에서 2021년 2학기 보육실습으로 A기관에서 80시간(2주) 진행 후 B기관에서 160시간(4주) 실습을 진행 한 경우, A기관, B기관 각각의 보육실습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3	보육실습 6주 240시간이상 해도 상관없나요?
A3	가정학습기간(방학)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록된 총 실습시간이 6주 240시간이 초과된 경우, ① 출근부(원본대조필) ② 가정통신문(어린이집 직인 필)등의 확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4	어린이집 원장의 지도교사 겸임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4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한 자로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 겸임이 가능하며 도서·벽자 농어촌 지역의 21~39인 이하 어린이집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참조, p.213)
Q5	보육실습 중 휴게시간은 필수인가요?
A5	해당 보육실습기관의 방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1시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 실습을 충족해야 합니다.
Q6	보육실습확인서 내 실습기간, 실습 총 시간 등 오기재 했을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A6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실습확인서 수정이 어려운 경우, 수기로 수정 부분을 긋고 올바르게 기재한 다음 해당 실습기관 직인 날인해주시면 됩니다. 단순 화이트 수정 및 직인 날인 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다시 제출 해야합니다.
Q7	보육실습확인서 수기 수정 시, 수정한 부분에 어린이집 직인이 아닌 학과장(교육원장) 직인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A7	보육실습확인서는 실습기관에서 발행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유치원장이 확인하므로 원장 직인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실습기관의 폐원과 같은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학과장 직인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Q8	보육실습 교과목 성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8	보육실습 교과목은 성적증명서를 기준으로 80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하며, 보육교사 2급, 3급 취득자 모두 해당합니다.
Q9	실습중간에 평가결과 변경 시 실습을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
A9	실습시작일 기준으로 평가인증유효기관(평가인증) 또는 평가등급(평가제)을 A, B로 확인이 되어지시면 실습이 가능합니다. 보육실습기관 평가등급 또는 평가인증유효기간 확인방법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 [어린이집 검색] – [평가] – [평가등급 또는 평가이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Q10	A기관에서 분할실습으로 진행하여 5주+1주로 나누어서 보육실습 확인서를 2장으로 발급받았는데 5주와 1주 사이에 평가인증기간 종료 또는 평가등급이 C등급으로 변경 되었을 경우 되었을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A10	5주와 1주 사이에 평가인증기간 종료 또는 평가등급이 C등급으로 변경 되었다면 1주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시) A기관 평가인증유효기관(평가인증)으로 실습 진행하였는데 5주 진행 후 1주는 분할 실습을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 해당 A기관이 분할 실습 진행 전 평가제 등급이 C등급으로 변경 되었다면 실습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분할 실습 경우 같은 보육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하더라도 실습 전 평가등급 또는 평가인증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1	병설유치원은 인가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A11	유치원장 또는 학교장이 발행한 실습기관 정원수와 최초 인가일이 확인되는 방과후과정(종일제)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12	보육실습이 개설된 학기 전 방학에 보육현장실습 6주를 마치고 바로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복학 후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면 실습이 인정되나요?
A12	법적 기준에 맞게 실습을 진행한 경우, 다시 보육실습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복학한 학기의 보육실습 교과목 성적에 반영되어야 하며 휴·복학 확인을 위한 학적부 제출 및 필요시 성적처리 근거가 담긴 학과장 발행의 사유공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13	보육실습확인서 확인 날짜는 실습 마지막 날짜로 해야 하나요?
A13	확인 날짜는 실습 마지막날 이후의 날짜로 작성 가능합니다.
Q14	간접실습을 진행한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14	간접실습확인서(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자료실〉서식자료〉13번) 양식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수증은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Q15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실습확인서를 제출하고 수정이 되나요?
A15	실습확인서를 제출 완료한 경우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기로 수정 후 어린이집 직인 날인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2. 단체신청

Q1	단체 신청 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개별신청해야 하나요?
A1	5명 이상부터 단체 신청이 가능하며, 미만인 경우 개별신청해주시면 됩니다.
Q2	단체신청 접수 후 졸업 확정 공문 발송 시점에서 졸업취소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제출한 개별 서류는 반환 받을 수 있나요?
A2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서류접수 이후 수수료 환불 또한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3	단체접수 신청기한(2023년 1월 27일)까지 성적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3	2023년 1월 27일까지 인터넷 자격 신청 후,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과 성적이 모두 기재된 성적증명서(원본)을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Q1	편입생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A1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내 보육관련 교과목 있는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원본을 구비서류들과 함께 제출 바랍니다.
Q2	대면수업시 수업8시간+시험1시간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A2	대면 교과목 실시 방법으로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 수업으로, 1회 이상 출석 시험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대면 수업의 운영 방식은 교육기관의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 가능합니다.
Q3	유사교과목 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법령상의 교과목과 교과목 명칭이 다른 경우 유사교과목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표준교과개요 내용 등을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됩니다.
Q4	지난번에 유사교과목 심의 요청하였는데, 이번에도 해야 하나요?
A4	과거 유사교과목 심의를 통해 인정된 경우 교육기관명, 학과, 해당년도, 이수학기 대상자리 자격기준이 필수적으로 동일해야만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 유사교과목 심의 결과 불인정된 경우라면 이후에 유사교과목 심의 요청을 하여도 심의 결과는 같습니다.
Q5	자격증 신청자 개별 사진 등록 시에 사진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A5	증명사진 규격은 3*4 사이즈입니다. 자격증 신청 시 등록해주신 증명사진이 들어갑니다.

※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단체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 공지사항 – '보육교사 자격기준 설명회' 게시글**의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단체신청 방법 안내'**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